

범죄학의 현재와 미래

전 돈 수[†]

가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아직까지 범죄학은 학문적 정체성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 그 주된 원인은 범죄학연구가 사회학적 접근방법에만 주로 의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죄학에는 생물학, 심리학, 그리고 사회학 등 여러 학문분야들을 모두 아우르는 간학문적 접근방법(interdisciplinary)이 동원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생물학이나 심리학적 연구가 사회학적 접근방법을 대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범죄를 연구하여 하나의 체계화 된 일반이론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그 이외에도 범죄학이 과학이 되기 위한 조건과 기타 앞으로 범죄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범죄학, 범죄학의 학문적 정체성, 범죄학과 과학, 생물학적 범죄학, 범죄심리학, 범죄학과 간학문적 접근방법

[†] 교신저자 : 전돈수, 경북 고령군(읍) 지산리 산120, 가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E-mail : dschon@kaya.ac.kr

‘범죄학(Criminology)’이란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1885년 Garofalo가 그의 저서 「Criminologia」를 출판하면서부터이다(정영석, 1986). 그러므로 서양에서의 범죄학 연구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범죄학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9년 법무부 산하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설립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김준호, 1995). 그러나 현재의 범죄학, 특히 한국의 범죄학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아직까지 범죄학이 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학계에서조차 범죄학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그들의 영어식 표기를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로 하고 있다. 이 영어식 표기를 그대로 번역한다면 「한국범죄연구소」 내지는 「한국범죄학연구소」가 되어야 타당할 것이다. 이처럼 범죄학에 대한 개념정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범죄학과 다른 유사분야와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면 범죄학과 형사사법학, 경찰행정학, 법의학, 범죄수사학, 그리고 범죄심리학 등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혼돈이 있어왔다. 이것은 범죄학의 연구대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범죄학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범죄학이 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데 또 중요한 것은 현재의 범죄학이 과학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학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알아본 후에 현재의 범죄학연구가 과학적인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만약 아직 현재의 범죄학을 과학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그렇게 되기 위한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셋째,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학연구는 그 특성상 윤리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범죄학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금까지 한국의 범죄학 연구는 미국의 이론을 그대로 도입하여 검증하는데 그쳤다(김준호, 1995).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는 사회특성이 많이 다르다. 따라서 이제는 한국 실정에 맞는 범죄학이론을 정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끝으로 현재 범죄학과 형사사법체계가 충돌하고 있다. 범죄학은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려고 한다. 그리고 범죄학자들은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인을 교정 및 교화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형사사법체계는 표면적으로는 교정 및 교화의 이념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도 처벌위주의 제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이윤호, 2002). 따라서 범죄학과 형사사법체계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제목이 「범죄학의 현재와 미래」로서 다소 거창하고 막연하게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제 위에서 열거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현재의 범죄학에 대해서 한 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범죄학, 특히 한국의 범죄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범죄학과 범죄학자

범죄학은 비교적 짧은 역사와 그 종합 학문적 특성으로 인하여 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우선 먼저 범죄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범죄학의 개념정의

범죄학을 의미하는 영어의 'Criminology'란 범죄를 뜻하는 'crime' 과 학문을 뜻하는 'logy'가 합성된 말이다. 학자들이 범죄학을 정의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은 미국의 사회학자 Sutherland와 Cressey(1970)의 주장이다. Sutherland와 Cressey(1970)는 범죄학을 법을 만드는 것, 법을 어기는 것, 그리고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대응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런 정의에 의하면 범죄학은 다음과 같은 세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범죄학은 왜 어떤 행위는 범죄로 규정이 되고 또 어떤 행위는 그렇게 되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이다. 둘째, 범죄학은 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한 연구이다. 세 번째 범죄학의 영역은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Sutherland와 Cressey(1970)의 정의에 따르면 범죄학을 범사회학, 범죄심리학, 범죄사회학, 경찰행정학, 형사사법학, 교정학, 경찰수사학, 그리고 법의학 등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게 된다. 물론 이렇게 폭넓게 범죄학을 개념정의 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이런 정의는 범죄학과 다른 분야와의 구별을 곤란하게 만든다. 그리고 19세기 후반부터 등장한 실증주의와 함께 실제로는 범죄학연구가 범죄 원인에 집중되어왔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범죄학을 좀 더 좁게 해석하는 관점도 필요하다. 그래서 협의로는 범죄학은 범죄인에 대한 연구, 즉 범죄 원인으로 한정해서 해석할 수 있다(김상균, 2004). 본 연구에서는 범죄학을 이런 좁은 의미로 이해하는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하려고 한다. 이렇게 본다면 범죄학이 범죄원인을 설명하는데

주로 관심을 가진 반면에, 형사사법학(criminal justice)은 범죄학의 지식을 이용하여 경찰, 법원, 그리고 교정제도에 의한 범죄대응을 연구하는 응용학문분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학문분야는 상당부분 겹쳐지고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Dantzker, 1998; Hagan, 1998; Jeffery, 1989).

범죄학의 주요 연구대상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라는 말이 있다. 만약 사회에 법이 없다면 Thomas Hobbes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상태"(War against all)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두 사람 이상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법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라는 말로부터 "사회 있는 곳에 범죄가 있다."라는 말을 도출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사회에는 항상 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은 그것을 어기는 행위 즉, 범죄를 전제로 해서 존재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처럼 범죄학의 주요 연구대상은 범죄와 범죄 행위라는 것은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법전에 있는 법과 경찰관들에 의해서 실제로 집행되는 법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경찰관은 규정된 제한속도를 위반한 운전자를 법에 따라 범칙금 통지서를 발부해야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경찰관은 사정에 따라서 그 운전자를 훈방조치만 하고 돌려보내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법전의 법과 구분되는 법실증주의(legal realism)를 주장하고 있다(Silbey, 2002).

사회학자들은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일탈행위도 범죄학의 연구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다(Jeffery, 1990). 일탈행위는 사회규범을 어긴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 사회에서는 어떤 행위가 옳고 그른가 하는 것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묵시적인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사회규범의 내용은 그 사회의 역사, 관습, 그리고 종교적 전통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이런 사회규범은 법과 상당부분 겹친다. 예를 들면 살인, 강도, 강간, 그리고 절도는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일탈행위이기도 하다. 그러나 범죄행위와 일탈행위는 동일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동성연애는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일탈행위이다. 그러나 동성연애는 균형법에서만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일반형법에서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범죄행위와 일탈행위의 범위는 영구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선 범죄행위와 일탈행위는 시대에 따라 변한다. 예를 들면 옛날에 에스키모 부족은 자신의 아내를 손님과 동침하게 하는 것을 예의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대의 에스키모 부족은 그런 전통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있다. 또한 범죄행위와 일탈행위의 범위는 국가와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다수의 정통회교 국가들은 음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 이외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음주자체를 불법화하지는 않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범죄행위와 일탈행위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한다. 또한 그들 사이의 관계도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일탈행위도 언제든지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일탈행위에 대해서 사회구성원들이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것을 법으로 규제하면 그것이 곧 범죄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일탈행

위도 범죄학의 연구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만약 범죄학자가 범죄현상만을 다룬다면 법원에 의해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범인만을 연구대상으로 할 소지가 크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암수범죄(dark figure of crime)가 많이 존재한다. 범죄학자는 이런 암수범죄까지 모두 연구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 의해서 유죄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범죄행위와 기타 일탈행위까지도 모두 범죄학의 연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일탈행위도 범죄학의 연구대상이 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어떤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느냐의 여부는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서 좌우된다. 다시 말하면 법은 권력과 부를 소유한 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면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자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소위 '화이트칼라 범죄'(white-collar crime)는 범죄로 잘 규정되지 않는다. 설사 그것이 불법으로 규정된다고 하더라도 전문직에 종사하는 중상류층은 자신들의 높은 사회적 지위와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법망을 교묘히 피해간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범죄학자가 그 연구대상을 범죄로만 제한한다면 순수한 학술연구가 아니라 정치적인 연구가 되기 쉽다(Shearing, 1995). 따라서 범죄학자는 일반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화이트칼라 범죄와 성적일탈 등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모든 반사회적행위를 폭넓게 연구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이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행위인지는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다(Tappan, 1947). 따라서 범죄학자들은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반사회적 일탈행위를 찾아서 연구해야 한다.

범죄학자란?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범죄학자는

주로 범죄의 원인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형사정책적 제안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범죄학자는 어느 한 특정 학문분야의 출신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각자 자신의 학문적 배경을 토대로 범죄와 범죄인에 관한 연구를 한다면 범죄학자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생물학, 심리학, 그리고 사회학 등의 학문배경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수와 연구소의 연구원들을 들 수 있다. 형사사법체계에 종사하는 경찰, 검사, 판사, 변호사, 그리고 교정공무원 등은 원칙적으로 범죄학자가 아니다. 다만 이런 형사사법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범죄의 원인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형사정책에 대해서 학술적인 연구를 한다면 범죄학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Jeffery, 1990).

범죄학과 과학

지금까지는 범죄학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이제 여기서는 '범죄학이 과학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과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과학의 의미

기존의 학자들은 과학의 중요한 요소로서 경험주의, 반증가능성, 그리고 가치중립성 등을 들고 있다. 여기서는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간략히 논의하겠다.

경험주의

많은 학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학(science)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일치된 견해가 존

재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자들은 경험주의뿐만 아니라 합리주의와 논리체계까지 폭넓게 과학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프랑스의 사회학자 August Comte는 지식이 초자연적인 설명에서 철학적 설명으로, 그리고 다시 과학적 단계로 발전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기독교는 성경에 나타난 신의 섭리에 진리가 있다고 믿는다. 이런 초자연적 설명이후에는 지식을 접근하는데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지배하여 왔다. 하나는 합리주의이고 다른 것은 경험주의이다. 합리주의자들은 인간의 논리와 이성만으로 진리를 알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합리주의자들은 인간의 경험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진리를 접근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런 합리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 철학적 설명이다. 이와는 달리 경험주의자들은 인간은 물리적 환경과의 오감(五感)을 통한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경험주의적 연구만이 과학이라고 주장한다(Jeffery, 1990).

흔히 학자들은 과학을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자연과학(natural science)은 자연현상을 다루는 학문으로서 수학, 물리학, 화학, 그리고 생물학 등이 있다. 반면 사회과학(social science)은 사회현상을 주로 다룬다. 여기에는 사회학, 행정학, 그리고 정치학 등이 속한다. 자연과학과는 달리 사회현상을 다루는 사회과학은 확률(probability)에 많이 의존한다. 그 이유는 사회현상은 복잡하기 때문에 개개의 사례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원칙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현상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Mayer, 1941). 그렇기 때문에 사회법칙은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고 단순히 일반적인 경향만 알려주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현상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반복해서 일

어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이극찬, 1999). 그래서 사회과학을 '경성과학(hard science)인 자연과학과 구분하여 '연성과학'(soft science)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사회과학은 주관적인 인간정신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과학은 과학(science)이 아니라 예술(art)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프랑스의 사회학자 Emile Durkheim은 인간의 주관적인 심리현상도 사회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정한 규칙과 질서를 발견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사회과학이라고 하더라도 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복잡한 사회현상으로부터 일정한 패턴을 찾기 위해서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것들을 다루어야 한다(이해영, 1999).

위와 같이 '사회과학'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Comte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다분히 합리주의 및 규범학적 성격을 많이 가진 신학, 철학, 그리고 법학에서 '학(學)'이란 과학(science)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여기서 '학'은 '학문분야'(discipline) 또는 '연구(study)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Mayer, 1941). 그래서 우리가 신학이나 법학을 신과학이나 법과학으로 부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신학, 철학, 그리고 법학이 가치가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단지 그런 '학문분야'들은 경험주의적인 방법으로 인식하기 힘든 것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뿐이다.

경험주의적 연구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이성, 즉 합리주의를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경험주의적 연구들은 인간의 이성에 의해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논리-연역적 방법(logico-deductive method)을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가설이 많은 경험적 연구들에 의해서 지지를 받을 때 비로소 하나의 이론으로서 자리를 잡게 된다. 따라서 과학은 인간의 이성을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관찰하고 측정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Hagan, 1998).

경험주의적 연구는 계량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모두 포함한다. 계량적 연구는 숫자를 통해서 그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보통 계량적 연구는 정부공식통계, 설문조사, 그리고 실험 등의 방법을 이용한다. 이 중에서 정부공식통계를 이용한 계량적 연구는 비교적 넓은 지역에 대한 범죄의 발생추이를 알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공식통계를 이용하여 한 지역의 특성과 범죄발생률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Shaw와 McKay(1929)가 했던 시카고 지역의 범죄분포에 관한 연구이다. 그러나 정부공식통계를 이용한 연구는 개개의 사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해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면 정부공식통계를 이용한 연구는 어느 지역이 살인사건발생률이 높은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런 연구는 개개의 살인사건에 대해서 범인이 어떤 동기와 방법을 통해서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위와 같은 계량적 연구방법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질적 연구이다. 어떤 물질은 양에서만 아니라 종류, 즉 질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난다(Kaplan, 1964). 다만 여기서 질적 연구란 순수한 철학적 연구와는 다르다. 즉 질적 연구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일어나는 사회현상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말한다. 대표적인 질적 연구들 중의 하나는 Sutherland(1937)가 했던 사례연구(case study)이다. Sutherland(1937)는 전문절도범이 된 한 소년의 일대기에 대해 심층면접을 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 연구 결과를 「전문절도범」(The Professional Thief)이란 책을 통해 발표하였다. 그 이외의 질적 연구로서 참여관찰의 방법(participant observation)도 있다. 갱(gang)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것은 직접 가서 관찰하지 않고는 알기 힘들다. 그 중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시카고 갱을 연구한

Thrasher(1927)의 저서 「갱」(The Gang)이다. 이런 질적인 연구는 계량적 연구를 통해서 알기 어려운 개개의 사례에 대해 심도 있는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이런 질적 연구는 보통 1~2개의 적은 사례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다른 사례에까지 일반화시키기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 이유는 인간의 행위는 개개의 사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김준호, 1995).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볼 때 계량적인 것은 물론 질적인 것도 모두 유용한 연구방법이다.

반증가능성

Karl Popper(2002)는 반증가능성(falsifiability)을 과학의 기준으로 보았다. 이것은 과학적 이론이란 경험적으로 검증하여 허위여부를 밝힐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학자가 어떤 연구가 허위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진리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는 판사가 재판을 통해서 '유죄가 아님(not guilty)'이라고 판결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피고인이 무고하다는 뜻은 아니다. 이것은 단순히 법원이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유죄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뿐이다. 따라서 설사 피고인이 '유죄가 아님'의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가 진범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연구를 진실이라고 확인(verification)하기보다는 허위가 아님을 입증함으로써 그 연구의 타당성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순수한 철학적인 연구는 허위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 한 철학이 오랫동안 존립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치중립성

과학이 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가치중립성이다. 이것은 연구자의 개인적 가치관이나 선입관이 연구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완전한 가치중립적 연구는 존재하기 힘들다(Lieblich, 2001). 특히 사회과학자는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연구자 자신이나 그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연구를 하나의 도구로 이용하는 경우이다. 이렇게 되면 학자는 객관적 사실과는 상관없이 연구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의 위험은 연구자가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미리 어떤 잠정적인 결론을 내려버리는 경우이다. 이것을 선입관이라고 부른다(Kaplan, 1964). 연구자는 이런 선입관 때문에 사회현상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관만을 피력하는 순수한 철학적 연구는 가치중립적인 연구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범죄학 연구의 비과학성과 문제점들

이미 앞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지금까지의 범죄학은 사회학자들에 의해서 주도되어왔다. 그래서 범죄학은 사회과학,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학의 한 분야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학적 범죄연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그것들은 개념의 모호성과 논리전개의 오류, 가치지향성, 불명확한 인과관계, 생태학적 오류, 그리고 범죄에 대한 예측과 통제의 곤란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범죄학의 과학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개념의 모호성과 논리전개의 오류

사회학자들이 만들어낸 대부분의 개념들은 모

호하다. 그래서 Nettler(1984: 2)는 "사회학은 애매 모호한 언어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표현하였다. 소외, 상대적 박탈감, 아노미(anomie), 그리고 사회통제(social control) 등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며, 또한 그것들을 어떻게 계량화시켜서 측정할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예를 들면 Durkheim (1893/1956)은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무규범 상태인 '아노미' (anomie)가 등장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아노미'가 정확히 어떤 상태를 의미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경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심지어 그런 '아노미' 상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의문이다.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전통적인 사회학이 사용하는 개념들이 모호한 것은 그것들이 단순히 어떤 현상에 꼬리표를 부착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개념들 자체가 범죄의 원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일부 사회주의계열의 범죄학자들은 개인수입의 불균형이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다시 범죄를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상대적 박탈감의 존재여부를 범죄발생률이 높다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뿐이다. 이것은 결과를 보고 원인을 짐작하는 논리적 오류이다. 전통적인 심리학도 이와 같은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Freud는 인간의 원초적 욕구인 성욕을 '원초아(id)로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성욕을 통제할 수 있도록 얻어진 장치를 '초자아(superego)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런 '원초아'와 '초자아'간에 교량역할을 하면서 양자의 균형을 맞추어 주는 장치를 '자아(ego)라고 하였다. Freud는 이들 간의 갈등과 충돌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을 때 정신이상(정신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Jeffery, 1990). 그러나 이들 개념들은 보이지 않는 대상에 단순히 명칭을 부여한 것에 불

과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 자체가 정신이상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Freud의 정신분석학의 등장 이후에 심리학은 정신-육체 이원론(mind-body dualism)에 입각한 연구에 치중하였다. 예를 들면 정신분석학자는 한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문제를 최면술(자유연상)을 통해 끌어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상담치료를 한다. 그러나 정신-육체 이원론은 허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객체가 없다는 측면에서 과학으로 보기 어렵다(Kaplan, 1964). 즉 정신분석학자는 연구대상자의 정신작용을 직접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이나 설문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측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은 연구대상자가 설문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 행동의 원인과 그 과정을 설명해 주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설문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연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이런 방법은 응답자의 기억력과 정직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범죄에 대한 전통적인 사회학적내지는 심리학적 접근방법은 과학의 한 요소인 반증가능성(falsifiability)이 약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그래서 Sagan(1995)은 우리는 허위를 입증할 수 없는 종교적, 법적, 그리고 정치적 신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가치지향성

전에도 논의한 것과 같이 과학이 되기 위한 또 다른 요소는 가치중립성이다. 그렇지만 기존의 연구는 범죄학자 자신의 가치관과 사상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많다. 한 예로 Karl Marx의 공산주의이론에 기반을 둔 범죄학자들은 우리 사회가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이분화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를 착취하고 억압한다고 한다. 그 결과 '가지지 못한 자는 생존을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한다. 이들 중에 극단적인 경우에는 범죄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혁명밖에 없다고 주장한다(Lilly, Cullen, & Ball, 1989). 심지어 이들은 경찰을 권력을 가진 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보기도 한다(Liebling, 2001). 이들 공산주의자들은 경험주의적 증거와는 직접적인 관계 없이 자신들의 사상과 가치관을 관철시키기 위해 범죄학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불명확한 인과관계

어떤 변인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들이 동시에 만족되어야 한다. 그것들은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의 존재, 논리적인 시간관계의 성립, 그리고 그 상관관계의 허위성의 부재 등이다. 첫째, 여기서 상관관계란 어떤 변인의 변화가 다른 변인과 관계있는 것을 말한다. 둘째, 논리적인 시간관계의 성립은 어느 변인이 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결과가 되는 변인보다 논리적인 시간에서 앞서서 발생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후에 발생한 것이 전에 발생한 것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끝으로 상관관계의 허위성의 부재는 상관관계가 연구에 포함되었던 것 이외의 제3의 변인에 의해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변인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제3의 다른 중요한 경쟁변인(들)이 없음을 밝혀야 한다(Hagan, 1993).

위와 같은 논의를 기준으로 할 때 대부분의 사회학적 범죄이론들은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이유는 범죄행위는 복잡한 현상으로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어

떤 변인이 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범죄의 발생보다 논리적인 시간에서 앞서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경찰관의 수와 범죄발생률 사이의 관계를 들 수 있다. 범죄발생률이 높아서 그것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경찰관의 수를 증가시켰는데 범죄발생률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이런 현상을 보고 연구자는 경찰관의 수를 늘리더라도 범죄가 줄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인력의 증원으로 경찰이 이전보다 더 많이 범죄를 발견하고 처리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처럼 높은 범죄발생률이 경찰관의 수를 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경찰인력의 증가가 범죄발생률을 높일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인력의 변화와 범죄발생률은 어느 것이 원인이고 결과인지 분별하기 힘들다. 결론적으로 많은 사회학적 연구는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는 알려줄지는 모르지만, 인과관계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생태학적 오류

Robinson은 생태학적 오류(ecological fallacy)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생태학적 오류는 집단수준에서의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개인적인 수준에서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오류라는 의미이다. Robinson은 미국에 있어서 문맹률과 외국 출생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그는 미국 전체를 9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을 때 그 둘 사이에 어느 정도의 부적관계($r = -.62$)를 발견하였다. 즉 외국출생자들이 문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48개 주로 세분화하였을 때는 그 부적관계가 약해졌다($r = -.53$). 더욱이 그 둘의 상관관계를 개인수준에서 검토했을 때는 아주 약한 정적관계($r = .12$)가 성립되었다(Hagan, 1993). 따라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그에 속한 개인에게 일률적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많은 사회학자들은 가난과 범죄가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거시적인(macro) 관점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하류층이 중상류층보다 범죄를 많이 저지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가난 한 사람들이 모두 범죄자가 되지는 않는다. 사실 가난한 사람들 중 다수는 범죄자가 되지 않고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간다. 따라서 개인수준에서 살펴볼 때 가난을 범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이것은 범죄행위에 있어서 개인적인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Wilson과 Herrnstein(1985)은 범죄행위에 있어서 개인간의 차이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범죄에 대한 예측과 통제의 곤란

과학은 기술(記述, description), 설명(explanation), 예측(prediction), 그리고 통제(control)등 4개의 수행 단계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술'이란 관찰을 통해 어떤 현상을 표현하는 것이다(인영섭, 1996). 둘째, '설명'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조사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셋째, '예측'은 '설명'을 바탕으로 미래에 발생할 현상에 대해서 추론하는 것이다. 끝으로 '통제'는 '예측된 현상을 조작하여 영향력을 미치려는 노력이다. 그러나 범죄행위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들을 통해서 는 범죄행위의 '예측'과 '통제'가 어렵다. 예를 들면 설령 가난이 범죄와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빈곤을 해결하여 범죄문제를 완화시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전체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다.

소결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전통적인 사회학적 및 심리학적 접근방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인간은 사회적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생물학과 심리학에서 발견되는 일반법칙과 자연 환경에 의해서도 제한받는 존재이다. 이것은 인간은 일반 동물과 다른 특징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일반 동물과 유사한 점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Mayer, 1941). 그래서 현재와 같이 범죄학을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만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범죄학은 엄격한 의미에서 아직 과학으로 보기 어렵다.

범죄학이 과학이 되기 위한 과제

여기서는 범죄학이 과학이 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것들에는 경험주의적 연구방법의 확대, 생물학적 연구방법의 확대, 간학문적(間學問的) 접근방법의 도입,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의 극복 등을 들 수 있겠다.

경험주의적 연구의 확대

물론 범죄학을 넓게 해석하여 법을 만드는 과정까지를 포함시킬 경우에는 어느 행위가 범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가치관의 논의는 '당위'(sollen)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것은 규범학적인 성격이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범죄학을 좁게 해석하여 범죄원인에 대한 연구로 한정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경험주의적 접근방법을 지향하여야 한다. 인간행동에 관한

연구는 '존재'(sein)와 관계가 있는 것이지 '당위'(sollen)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범죄원인에 대한 연구는 인간행동에 대한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지, 미래의 연구방향을 설정하는 가치관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가치관에 대한 논쟁에 과학이 해답을 줄 수는 없다(Hoover, 1992). 특히 현재의 범죄연구에서 부족한 것은 실험이다. 실험은 다른 연구방법에 비해서 인과관계를 파악하는데 보다 효과적이다. 따라서 실험연구는 범죄행위를 예측하고 통제하는데 보다 많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물학적 연구방법의 확대

범죄에 대한 연구는 유럽에서 Garofalo(1885/1914), Ferri(1892/1917), Goring(1913), 그리고 Lombroso(1911)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주로 생물학적 접근방법과 함께 시작되었다. 특히 Lombroso(1911)는 범죄성은 유전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190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 Shaw와 McKay(1929), 그리고 Sutherland(1937) 등과 같은 미국의 시카고학과 사회학자들이 범죄연구를 주도하였다. 특히 Sutherland(1937)는 사회학습이론을 소개하면서 범죄도 다른 일반 행위와 마찬가지로 학습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이들 시카고학과 사회학자들은 유전이나 생물학적 요인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부인하였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생물학적 연구가 범죄학에서 터부(taboo)시 되기까지 하였다. 1987년부터 1996년까지 미국에서 발행된 35개의 범죄학 교재들을 조사한 결과 그 교재들은 4.6% 정도의 공간만을 생물학적 이론들을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다(Wright & Miller, 1998).

August Comte는 사회연구(social studies)는 생물

학의 완전한 지식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Mayer, 1941). 한편 Walsh(2000)는 현재 범죄학의 위기는 사회학자들이 범죄행위에 있어서 생물학의 중요성을 왜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Zahn(1999)은 1998년 미국 범죄학회(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의 회장 취임사에서 생물학적 연구방법의 도입은 범죄학 분야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Carlson(1977: 2)은 "우리의 마음은 뇌의 기능이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심리학의 기본 전제이다. 마음이 뇌를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또 뇌가 마음을 통제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뇌는 마음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주장하였다. 요즈음은 생물학과 의학의 발전으로 정신불열증과 같은 정신이상이나 뇌나 신경계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전돈수, 2003). 인간은 뇌가 없다면 정신작용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뇌와 신경계를 연구하는 것이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의 핵심과제이다(Jeffery, 1990).

범죄에 대한 생물학적 연구의 또 다른 중요성은 유전이 어떻게 인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미 유전 이상이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잘 알려진 것과 같이 정상적인 남자가 XY의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 '수퍼남성'은 XYY로서 남성 염색체인 Y를 하나 더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수퍼남성'은 정상적인 남자보다 더 폭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 또한 인간이 섭취하는 음식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설탕의 과다섭취로 발생하는 저혈당증은 여러 가지 이상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또한 알코올이나 마약의 상습복용도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그 이외에도 납(lead)과 카드뮴(cadmium)과 같은 공해물질에 노출된 사람이 폭

력성이 강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전돈수, 2003). 결론적으로 인간은 사회적인 환경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범죄학에 있어서 생물학적 연구가 꼭 필요한 것이다.

간학문적(間學問的) 접근방법의 도입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범죄행위에 대한 생물학적 연구도 많이 부족하지만 일부 있다. 그래서 현재의 범죄학 연구는 어느 정도는 여러 학문 분야에서 나름대로 '범학제적(汎學諸的) 접근방법'(multidisciplinary)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생물학적 연구들은 범죄행위를 설명하는데 있어 심리학이나 사회학적 연구들과 체계적인 연관성을 맺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여러 분야의 범죄학 연구업적들은 하나의 일반이론으로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저명한 범죄학자 C. Ray Jeffery(1990)는 기존에 있었던 체계이론(system theory)을 범죄연구에 적용하였다. 체계이론에 의하면 이 세계는 여러 가지의 하위 체계(subsystem)와 상위체계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한편 이런 하위체계와 상위체계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느 한 하위체계의 변화는 상위체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위체계의 변화는 하위체계의 변화를 초래한다. 이런 상·하위 체계 사이의 상호작용은 어느 하나가 원인이고 다른 것이 그의 결과인 일방적인 인과관계 하고는 다른 것이다. Jeffery (1990)는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간의 세포, 생체조직, 개인, 집단, 그리고 국가 등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이런 복잡한 인간의 행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화학, 생물학, 의학, 심리학, 사회학, 그리고 정치학 등의 여러 학문들이 총 동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범죄학자는 단순히 '범학제적 접근방법'(multidisciplinary)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간학문적인 접근방법'(interdisciplinary)을 동원하여야 한다. 흔히 학자들은 영어의 'multidisciplinary'와 'interdisciplinary'란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학자들마다 그것들을 우리말로 각각 다르게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multidisciplinary'는 하나의 연구주제(분야)에 대해서 여러 학문분야의 지식과 접근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는 달리 'interdisciplinary'는 하나의 연구주제에 대해서 단순히 여러 학문분야들의 지식과 접근방법을 이용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즉 'interdisciplinary'는 여러 학문을 통하여 연구하는 것이 하나의 체계화된 일반이론으로 통합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일컫는다.

표 1은 체계이론에 근거해서 여러 학문분야가 어떻게 범죄현상을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수준에서는 나이, 성(sex), 민족, 또래집단, 가족, 그리고 학교 등을 통해 범죄를 연구할 수 있게 도와준다. 한편 심리학적 수준에서는 학습과정, 성격발달, 그리고 집단화 등을 통한 조사할 수 있게 해준다. 끝으로 생물학적인 수준에서는 유전학, 신경학, 그리고 생화학을 통해서 범죄현상과의 관련성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여러 수준의 요인들이 계속해서 상호작용을 한다는 사실이다. 유전자는 뇌에 영향을 미친다. 다시 뇌는 학습, 그리고 성격발달과 관련을 갖는다. 이번에는 이런 것들이 가족, 또래집단, 그리고 학교 등과 관련된 문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끝으로 이것들은 정치과정과 형사사법제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위체계의 변화는 하위체계에 영향을 준다(Jeffery,

표 1. 체계이론의 관점에서 본 각 학문수준별 범죄행위에 대한 설명가능성

체계	개념	학문분야
사회	국제기구, 국가, 정치과정, 형법, 법원, 교도소	사회학, 형법학, 정치학
인구	연령, 성(性), 민족(인종)집단, 도시, 농어촌	지리학, 인구학
조직	종교, 민족, 사회, 정치	사회학, 정치학
집단	친구집단, 가족, 학교	사회학, 교육학
개체(Organism)	학습, 성격, 범죄행위	심리학, 사회심리학
생체조직(Organ)	뇌, 신경전달물질	신경학, 생정신의학(biopsychiatry), 정신생물학(psychobiology), 정신약학 (psychopharmacology), 생화학
세포	유전자(Genes)	유전학, 생물학

출처: C. Ray Jeffery. (1990). *Criminology: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p. 29.

1990).

‘인간의 행동이 유전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아니면 ‘자라난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하는 것은 오랫동안 논란거리가 되어왔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간학문적 접근방법을 추구할 때 해답을 얻을 가능성이 보여 진다. Gibbons(1992: 16)는 “법을 어기는 것은 생물학적, 심리학적, 그리고 사회학적 요소들이 함께 복잡한 과정을 통해 발생한 결과라는 경험주의적 증거들이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그 이외에도 Adler, Mueller, 그리고 Laufer(1995)는 인간은 유전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한 산물이란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원칙이라고 주장하였다. 한 예로 Jeffery(1990)는 인간의 행위는 일단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요인(genotype)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간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환경(environment)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하였다. 하나는 사회 환경(사회학습과 사회계층 등)이고 다른 하나는 물리적 환경(공해물질, 음식, 그리고 약물과 술 등)이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생물학적 연구가 기존의 사회학적 연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생물학을 포함시킨 ‘간학문적 접근방법’은 기존의 사회학적 연구를 보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Sutherland(1937)는 ‘차별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 또는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이라고 불리는 이론을 만들었다. 이 이론은 범죄행위도 다른 일반 행위와 마찬가지로 타인으로부터 배운다는 것이다. 그러나 Sutherland(1937)의 사회학습이론은 몇 가지 중요한 약점이 있다. 첫째, 학습에도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Wilson & Herrnstein, 1985). 동일한 조건에서 비행소년과 접촉한 소년이라도 모두 범죄자가 되지는 않는다. 둘째, 사회학습이론은 살인, 강도, 그리고 강간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격정범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격정 범인은 선량한 사람들과 주로 접촉하면서 자란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끝으로 Sutherland(1937)의 이론은 학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회학습이론은 심리학이나 생물학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심리학자인 Skinner가 주장한 '조작적 조건 이론'(operant conditioning)에 의하면 '강화'와 '처벌'의 원칙에 의해서 학습이 발생한다고 한다(김현택, 1996). 따라서 사람도 잘한 행동은 상을 주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벌을 줌으로써 올바른 방향으로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학자인 Sutherland가 하지 못한 것을 Skinner의 심리학적 이론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학습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심리학적 이론도 더 구체적으로 신체의 어느 부위가 학습과 관계있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이에 대해서 생물학적 연구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뇌와 신경계의 어느 부분이 학습(기억과 판단)을 담당하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인간의 기억장치는 시냅스(synapses)와 신경전달물질(neurotransmitters)과 관계가 있다고 한다(Jeffery, 1990). 달리 말하면 뇌와 신경계의 이상이 학습장애를 불러 올수도 있다.

위와 같이 사회학뿐만 아니라, 생물학과 심리학 등의 여러 분야를 동원한다면 한 가지 시각에서 볼 때보다 범죄현상에 대한 설명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범죄에 대한 예측과 통제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리적인 문제의 극복

과학적으로 인간행동에 대한 실험과 교정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여서 그것을 무턱대고 실현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런 방법이 비윤리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범죄학 연구도 이런 윤리적인 문제에 빠졌던 적이 있었다. 한 때 미국에

서는 범죄도 유전된다는 연구결과 때문에 흉악범의 생식기능을 차단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범죄행위에 대한 생물학적 연구는 신롬부로스주의(neo-Lombrosian)로 간주되어 비판을 받아왔다. 이처럼 생물학적 연구는 범죄학에서 소외당하여왔다. 심지어 범죄생물학자들이 생물학적 연구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신체위협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Jeffery, 1990). 위에서 언급한 문제 이외에도 범죄학 연구는 연구대상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있다.

범죄학자와 정부는 위와 같은 윤리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범죄학자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내용, 방법, 그리고 위험성 등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이유는 Erikson(1967)이 지적한 것과 같이 연구대상자의 동의 없이 연구하는 것은 의사가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Horowitz와 Rainwater(1975)는 최소한 연구대상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소지가 있는 생물학, 의학, 그리고 심리학을 응용한 연구는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연구대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아있다(Boruch, Vito, & Cecil, 2000).

위와 같은 사전 동의에 대한 내용은 재소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만약 연구자가 재소자들의 과거 범행사실에 대해서 비밀보장을 약속한 경우에는 경찰과 검찰에 의한 범행사실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적보장을 해주어야 한다(Esbensen, 1991). 그 중 하나의 방법은 미국연방정부의 보건복지

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가 채택한 방법이다. 미국 보건복지부는 연구자의 연구계획을 심사하여 그것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비밀보장증서(certification of confidentiality)를 발행하고 있다. 이 증서를 받은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경찰에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 면책 특권을 가진다(Boruch et al., 2000).

둘째, 정부는 연구대상자의 신체안전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연구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정부의 사전허락을 받도록 규제하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미국정부는 연구대상자를 위한 사생활보호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정부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하는 연구는 이런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정부에 의한 규제는 연구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지, 정부가 마치 '큰형'(big brother)처럼 연구 활동자체를 마음대로 통제하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Hagan, 1993). 한편 한국은 아직 제대로 된 범죄학회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범죄학회를 활성화시켜서 자체적으로 범죄학 연구에 필요한 윤리강령(code of ethics)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기타 한국 범죄학의 과제와 발전방안

위에서는 범죄학이 과학이 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제 여기서는 위와 같은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범죄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한국 실정에 맞는 이론의 개발, 범죄학과와 범죄학회의 설립, 그리고 형사사법법체계에 과학적 원리의 도입 등으로 나누어서 논의하고자 한다.

한국 실정에 맞는 이론의 개발

1960, 70년대의 한국 범죄학은 미국의 범죄이론을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설립되면서 미국의 범죄이론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은 사회실정이 많이 다르다. 우선 미국은 남한의 93배가 넘는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다. 또한 미국은 이민으로 이루어진 다인종 사회로써 흑백간의 갈등이 범죄를 비롯한 사회문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자유로운 총기소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에 총기가 자주 사용된다.

위와 같이 한국과는 실정이 많이 다른 미국에서 나온 범죄이론을 그대로 한국사회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우리도 한국 사회 특성에 맞는 이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특성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작은 영토에 많은 인구가 집중하여 살기 때문에 제한된 자원과 기회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한다는 것이다. 경쟁은 어느 나라에나 있기 마련이지만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그 정도가 심하다. 이런 와중에 한국은 1990년대에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부터는 경제난과 그에 따른 실업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한국은 급속한 사회문화적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문화가 한국사회에 급속하게 침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찾기가 어렵다.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한국은 미국과는 식생활 습관이 다르다. 뿐만 아니라 공해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 다시 말하면 주로 도시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카드뮴, 그리고 수은 등과 같은 공해물질은 인간의 두뇌와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LeVine & Upton, 1994).

미국의 범죄이론을 한국 실정에 맞도록 변형하여 적용한 예를 하나 들어 보겠다. Merton(1949)은 자신의 긴장이론(strain theory)을 통해서 문화목표(culture goals)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legitimate means)간의 괴리에서 오는 긴장상태가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즉 일반적으로 주변사람들이 기대하는 사회적 성공과 이것을 합법적으로 이룰 수 있는 수단과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김준호 등은(1990)은 청소년비행을 설명하기 위해서 Merton(1949)의 긴장이론을 일부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즉 한국의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소위 명문대학에 들어가라고 하는 공부압력을 받고 있다. 따라서 현재 자신의 성적이 부모의 기대와 큰 차이가 있을 때 청소년은 비행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경험적 연구를 통해 밝히고 있다. 즉 김준호 등은(1990) 부모로부터의 기대와 학생의 현재 성적과의 차이를 긴장상태로 재해석하여 적용한 것이다.

범죄학과와 범죄학회의 설립

현재 한국에는 30개 이상의 4년제 대학과 20개 이상의 2년제 대학에 경찰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다. 이들 중 상당수의 대학들이 '경찰행정학'이란 학과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도 법학과 경찰학과목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도 미국과 같이 범죄학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여야 한다. 그래서 간학문적 접근 방법을 통한 범죄연구를 위해서 다양한 학문배경을 가진 교수와 학생으로 구성된 '범죄학 및 형사사법학'으로 학과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경찰행정학' 대신

* 미국에서 학과 명칭을 '범죄학 및 형사사법학'

에 '형사사법학'이 적합한 이유는 그 학과가 경찰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정공무원을 비롯하여 형사사법체계에 근무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한국에 아직까지 제대로 된 범죄학회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생물학, 정신의학, 심리학, 사회학, 그리고 법학 등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을 모두 아우르는 범죄학회가 설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회장단은 비교적 여러 분야에 두루 식견을 가지고 있는 학자가 맡아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범죄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는 이처럼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논문을 게재하여 여러 학문분야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에도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경찰관 시험과목편성의 문제이다. 현재의 경찰관(일반 순경) 시험과목에는 경찰학개론, 영어, 수사학, 형법, 그리고 행정학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경찰관은 일선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난다. 그리고 경찰관은 간혹 그들과 언어적·물리적 충돌을 겪게 된다. 결국 우수한 경찰관은 사람을 잘 다루는 기술을 갖춘 자라고 볼 수 있다. 범죄학은 인간행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하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대학에 설치된 경찰 관련학과 교과과정에 범죄학 과목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경찰관 시험에 '범죄학개론'이 필수과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학들이 범죄학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가져서 범죄학이 학문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으로 한 대표적인 대학은 플로리다 주립대학교(Florida State University), 메릴랜드대학교(University of Maryland), 그리고 미시건 주립대학교(Michigan State University) 등이 있다.

형사사법체계에 과학적 원리의 도입

현재 우리의 형사사법체계는 Beccaria(1774/1967)와 Bentham(1789)과 같은 고전주의 범죄학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런 고전주의 범죄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은 어떤 것이 옳고 그른 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시키고 고통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고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간은 자신이 선택한 행동에 대해서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형사사법제도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처벌의 정당성을 두고 있다. 반면 과학적인 연구를 주장하는 실증주의 범죄학파는 인간의 이성은 유전이나 환경적인 요인 등에 의해서 제한된다고 본다. 따라서 실증주의 범죄학자들은 범죄인을 처벌하기 보다는 교화 및 교정치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대의 형사사법체계가 실증주의의 영향을 받아 표면적으로는 교정의 이념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아직도 고전주의 학파의 원리에 근간을 두고 있다. 그래서 형사사법체계는 범인의 범행사실을 입증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서 처벌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이런 범죄학과 형사사법체계와의 충돌문제를 범죄예방, 법원, 그리고 교정의 단계로 나누어서 간략히 살펴보겠다.

첫째, 현재 우리의 범죄대응 전략은 범죄가 이미 발생한 이후에 그에 대한 사후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 범죄대응 전략이 사후적이라는 의미는 경찰이 시민들의 범죄신고 전화에 의존해서 사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또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범죄예방 전략이 미비하다. 그래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범죄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면 의례히 나오는 말이 처벌의 강화이다. 그러나 중

형선고를 통한 처벌의 강화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는 몰라도 범죄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뿐만 아니라 일단 범죄피해가 발생하면 그것을 회복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 강력범죄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예를 들면 살인피해자의 목숨을 다시 살릴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범죄의 피해가 이미 발생한 후에 그에 사후적(reactive)으로 대응하는 것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적(proactive)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인 범죄학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인간의 범죄행위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범죄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전체 비행소년의 5% 정도가 중범죄의 50% 이상을 저지른다고 한다(Jeffery, 1989).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은(high risk offenders)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정신병 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는 범죄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다.

둘째, 현재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데 영향을 끼친 생물학적, 심리학적, 그리고 사회학적 배경에 대한 내용은 그의 처분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피고인에 대한 전문의사의 신경정신과적 진단을 통해서 적절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재범을 막는데 기여할 수 있다(Group for the Advancement of Psychiatry, 1993). 전 미국 대통령 Reagan에게 총격을 가한 Hinckley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뇌의 단층사진이 그의 정신이상을 입증한 것이 하나의 좋은 예이다. 그 결과 Hinckley는 감옥에 가는 대신에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Jeffery, 1990).

셋째, 우리의 교정제도는 교정 및 교화의 이념을 포기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74년에 Martinson이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는 당시의 여러 교정 프로그램들이 범죄발생과 재범을 막는

데 모두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아무것도 효과 없다(Nothing Works)”라는 말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Cullen & Gendreau, 2001). Martinson(1974)의 논문이 발표된 이후에 교정 및 교화이념을 앞세운 교정정책에 대한 비판이 끈임 없이 일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교정이념을 아예 포기하는 주(州)들도 등장하고 있다. 이런 주(州)들은 범인의 개인적인 환경과 특성에 따른 처우를 하기보다는 죄질과 전과만을 근거로 하여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이것은 교정이념이 등장하기 이전의 단계인 응보형(應報刑) 시대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불행하게도 교정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침체되었다(Cullen & Gendreau, 2001).

위와 같은 교정제도의 실패는 과학적인 원리를 추구하는 교화 및 교정이념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가 과학적인 방법을 교정정책에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미국의 한 연구에 의하면 전체 교도소 재소자의 40% 이하만이 교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Bartollas, 1995). 특히 한국의 경우는 교정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직업훈련과 학과교육 정도가 고작이다(이윤호, 2002). 그리고 과거의 교정 프로그램들은 범죄학의 연구업적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교정제도는 정치권력과 여론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었다. 이것은 범죄학과 교정정책간의 괴리가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Hood, 1999). 이런 이유 때문에 효과적인 교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증거에 근거한”(evidence based)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효과가 있는 교정 프로그램을 선별할 수 있다(Cullen & Gendreau, 2001). 예를 들면 약물치료, 심리치료, 그리고 행동치료 등을 들 수 있다(김현택, 1996).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아직까지 범죄학은 학문적 정체성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 그 주된 원인은 범죄연구가 사회학적 접근방법에만 주로 의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죄학이 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생물학, 심리학, 그리고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들을 모두 아우르는 간학문적 접근방법(interdisciplinary)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생물학적 연구가 사회학적 연구를 대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범죄행위를 연구하여 하나의 체계화 된 일반이론으로 정립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에 다양한 학문배경을 가진 교수와 학생들로 구성된 범죄학과를 설립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범죄학회도 설립하여 여러 학문분야간의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한편 교정 및 교화의 이념을 내세운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그 이념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다. 반대로 아직까지 과학적인 원리에 입각한 범죄학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과학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서 좋은 교정과 범죄예방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범죄학이 과학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Palermo, 1999). 지금까지의 논의는 아직 개괄적인 수준에 머무른 느낌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범죄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상균 (2002). 최신 범죄학원론. 양서원
- 김준호 (1995). 범죄학 연구에 있어서 계량적 연

- 구방법의 평가와 전망. *형사정책연구*. 6(3), 5-30.
- 김준호, 노성호, 고경임, 최원기 (1990).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공부압력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89-03(청소년범죄 연구 1).
- 김현택 외 8인 공저 (1996). 인간의 이해 심리학. 학지사.
- 안영섭 (1996). 사회과학방법론총설: 거시적 및 미시적 방법론과 컴퓨터 통계분석방법. 법문사.
- 이극찬 (1999). 정치학(제6 전정판). 법문사.
- 이윤호 (2002). 교정학개론. 박영사.
- 이혜영 (1999). 사회과학연구방법론. 학지사.
- 전돈수 (2003). 범죄행위에 대한 생물학적 연구의 필요성. *수사연구*, 제2월호, 43-50.
- 정영석 (1986). 형사정책. 법문사.
- Adler, F., Mueller, G. O. W., & Laufer, W. S. (1995). *Criminology*(2nd ed.). New York: McGraw-Hill.
- Bartollas, C. (1995). *Rehabilitation should be the goal of crime control*. In R. Boostrom(ed.). *Enduring issues in criminology*. San Diego: Greenhaven Press.
- Beccaria, C. (1967). *On crime and punishment*. Translated by H. Paolucci. Indianapolis: Bobbs-Merrill Educational Publishing.
- Bentham, J. (1945). *The limit of jurisprudence defined: Being part two of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Boruch, R. F., Victor, T., & Cecil, J. S. (2000). Resolving ethical and legal problems in randomized experiments. *Crime & Delinquency*, 46(3), 330-353.
- Carlson, N. (1977). *Physiology of behavior*(3rd ed.). Boston: Allyn and Bacon.
- Cullen, F. T. & Gendreau, P. (2001). From nothing works to what works: Changing professional ideology in the 21st century. *The Prison Journal*, 81(3), 313-338.
- Dantzker, M. L. (1998).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Comparing, contrasting, and intervening disciplines*. Boston: Butterworth-Heinemann.
- Durkheim, E. (1956).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 New York: Free Press.
- Esbensen, F. (1991). Ethical considerations in criminal justice research. *American Journal of Police*, 10(2), 87-104.
- Ferri, E. (1917). *Socialism and modern science*(Darwin, Spencer, Marx). Translated by R. R. L. Monte. Chicago: Kerr.
- Gibbons, D. C. (1992). *Society, crime, and criminal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Garofalo, R. (1914). *Criminology*. Translated by R. W. Millar. Monclair, NJ: Patterson Smith.
- Goring, C. (1913). *The English convict: A statistical study*. Monclair, NJ: Patterson Smith.
- Group for the Advancement of Psychiatry. (1993). *Psychotherapy in the future*. Report no.133.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 Hagan, F. E. (1993). *Research method in criminal justice and criminology*.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Hagan, F. E. (1998). *Introduction to criminology: Theories, methods, and criminal behavior*(4th ed.). Chicago: Nelson-Hall Publisher.
- Hood, R. (1999). Penal policy and criminological challenges in the new millennium. *The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Criminology*, 34(1), 10-16.
- Hoover, K. R. (1992). *The elements of social scientific*

- thinking*. New York: St. Martin's Press.
- Lombroso, C. (1911). *Crime, its causes and remedies*. Translated by H. P. Horton. Boston: American Institute of Criminal Law.
- Jeffery, C. R. (1989). *An interdisciplinary theory of criminal behavior*. In W. S. Laufer & F. Adler(ed.). *Advances in criminological theory*(Vol. 1).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Books.
- Jeffery, C. R. (1990). *Criminology: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Kaplan, A. (1964). *The Conduct of inquiry*. San Francisco: Chandler Publishing Company.
- LeVine, D. G. & Upton, A. C. (1994). *The city as a human environment*. Westport, CT: Praeger.
- Liebling, A. (2001). Theory, practice and allegiances in prison research.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1, 472-484
- Lilly, R. J., Cullen, F. T., & Ball, R. A. (1989). *Criminological theory: Context and consequences*.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 Mayer, J. (1941). *Social science principles in the light of scientific method with particular application to modern economic thought*.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Merton, R. K. (1949).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Toward the codification of theory and research*. Glencoe, IL: Free Press.
- Nettler, G. (1984). *Explaining crime*(3rd ed.). New York: McGraw-Hill.
- Palermo, G. B. (1999). Editorial: Criminology in the 21st century: Foreseeable change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43(2), 131-133.
- Popper, K. (2002). *The logic of scientific discover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Classics.
- Sagan, C. (1995). *The demon-haunted world: Science as a candle in the dark*. New York: Random House.
- Shaw, C. R. & McKay, H. (1929). *Delinquency areas: A study of the geographic distribution of school truants, juvenile delinquents, and adult offenders in Chicago*.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hearing, C. D. (1995). *Criminologists must broaden their field of study beyond crime and criminals*. In Ron Boostrom(ed.). *Enduring issues in criminology*. San Diego: Greenhaven Press.
- Silbey, S. S. (2002). Mutual engagement: Criminology and the sociology of law. *Crime, Law, & Social Change*, 37, 163-175.
- Sutherland, E. (1937). *The professional thief*.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utherland, E. & Cressey, D. (1970). *Criminology*. Philadelphia: Lippincott.
- Tappan, P. W. (1947). Who is the criminal?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2, 96-102.
- Walsh, A. (2000). Behavior genetics and anomie/strain theory. *Criminology*, 38(4), 1075-1109.
- Thrasher, F. (1927). *The gang: A study of 1,313 gangs in Chicago*.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ilson, J. Q. & Herrnstein, R. J. (1985). *Crime and human nature*. New York: Simon & Schuster.
- Wright, R. A. & Miller, J. M. (1998). Taboo until today? The coverage of biological arguments in criminological textbooks, 1961 to 1970 and 1987 to 1996.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6(1), 1-19.
- Zahn, M. A. (1999). Thoughts on the future of criminology. The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1998 presidential address. *Criminology*, 37(1), 1-15.

1 차원고접수일 : 2004. 4. 5

최종원고접수일 : 2004. 4. 30

The Present and Future of Criminology

Don Soo Chon

Kaya University,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Criminology is not a science yet in the sense that the word is used to describe the hard science. It is due to the fact that sociologists have dominated in the study of crime and criminals. Thus, future criminological studies should adopt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including such disciplines as biology, psychology, sociology, and so on. The interdisciplinary approach needs to pursue a general theory by systematizing the achievements from various disciplines in the explanation of criminal behavior. The current study also discussed several issues which are conducive to the scientific study of criminal behavior.

key words : criminology, criminology as a discipline, criminology and science, biological criminology, psychological criminology, criminology as an interdisciplinary science